

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103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처분의 내용

- 1) 이 별표에서 “연습허가 취소”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허가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(이하 이 별표에서 “연습허가”라 한다)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.
- 2) 이 별표에서 “효력 정지”란 일정기간 조종연습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처분기간의 산정

- 1)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
- 2)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
- 3)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,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 다만,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.
- 4)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조종연습생(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만을 말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조종연습생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종연습생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.
- 5)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6) 5)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[5)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]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7)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,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- 8) 3)에서 “같은 위반행위”란 제2호의 같은 목(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을 말한다)의 위반행위를 말한다.

다. 처분의 조정

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.
 - 가)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나)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
(경미한 위반행위로 한정하며, 1회만 적용할 수 있다)
 - 다) 위반행위를 한 연습생이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(경미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
 - 라)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·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·장애,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마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.
 - 가)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나)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(公衆)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
 - 다) 위반 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
 - 라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연습허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	연습허가 취소
2)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가) 벌금 200만원 이상 나)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다) 벌금 100만원 미만	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	연습허가 취소 효력정지 50일 효력정지 30일
3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)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	연습허가 취소

나)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)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		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
4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	연습허가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
5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6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7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8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9) 법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종연습등을	법 제47조의2제1항제8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
한 경우		
10)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9호	가. 주류의 경우 1) 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 0.06% 미만: 효력 정지 60일 2) 혈중알코올농도 0.06% 이상 0.09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3) 혈중알코올농도 0.09% 이상: 연습허가 취소 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) 3차 이상 위반: 연습허가 취소
11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0호	가. 주류의 경우 1) 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 0.06% 미만: 효력 정지 60일 2) 혈중알코올농도 0.06% 이상 0.09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3) 혈중알코올농도 0.09% 이상: 연습허가 취소 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) 3차 이상 위반: 연습허가 취소

12)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1호	연습허가 취소
13)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가)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나)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2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
14)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,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가)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나)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3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75일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15)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4호	연습허가 취소

나. 항공신체검사증명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처분내용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	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
2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	법 제47조의2제2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

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항제3호	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3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4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2항제5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5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2항제6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6) 법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7)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	가. 주류의 경우 1) 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 0.06% 미만: 효력 정지 60일 2) 혈중알코올농도 0.06% 이상 0.09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3) 혈중알코올농도 0.09% 이상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

		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)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
8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 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	가. 주류의 경우 1) 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 0.06% 미만: 효력 정지 60일 2) 혈중알코올농도 0.06% 이상 0.09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3) 혈중알코올농도 0.09% 이상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)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
9)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	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